

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. 10. 23 선고 2024가단1662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4. 9. 11.

판 결 선 고 2024. 10. 23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피고 B는 2024. 1. 16.부터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8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가. 피고 B : 자백간주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나. 피고 C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박옥희

별지